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재자 기준 마련

-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제도화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의 범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규정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가능성, 이용자 간 정보유통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 정보확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규정했다.

이용자 간 정보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② 게재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규정했다.

③ 공인(公人)의 범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시 공표 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의 범위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판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및 그 후보자 ▲「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의 대표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다.

④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누구든지 불법·허위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때 성명과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대상 상세주소(URL),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증빙자료를 필수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⑤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전 세계 160여 개 사실확인 기관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 인증을 통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사실관계 확인 기관 역할을 하는 단체는 이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⑥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한 보고서 공개 방법,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내용을 규정하고, 사실확인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편집상·운영상 독립성 유지 규정 등을 명시했다.

⑦ 투명성센터 업무

개정된 법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해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곳의 주요 업무도 구체화했다.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⑧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자로서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임이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 외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와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붙임 2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붙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허위조작정보정책팀	책임자	팀 장	박강욱 (02-2110-1640)
		담당자	사무관	임승은 (02-2110-1642)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u>민·형사상의 소제기</u>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u>명예훼손분쟁조정부</u>(이하 “<u>명예훼손분쟁조정부</u>”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u>명예훼손분쟁조정부</u>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u> 3. (생략)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 ----- -----. 1. 2. (현행과 같음) 3. -----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 법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 ----- ----- ----- <u>분쟁조정부</u>----- -----. 1. (현행과 같음) 2. <u>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제기하려</u>----- 3. (현행과 같음)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 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 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② 분쟁조정부-----

-----.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분쟁조정부-----

-----.

② 분쟁조정부-----

-----.

③ (헌행과 같음)

④ 분쟁조정부-----

-----.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에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법 제44조의10제1항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

<신 설>

<신 설>

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2.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

제35조의5(공인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
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5.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
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
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
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
3. 신고 대상 정보가 게시된 상세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위치
4.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5.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제35조의8(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

<신 설>

한 규범)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 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하 “규범”이라 한다)이란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윤리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범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의9(사실확인 단체 활동사항)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증한다.

②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 이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의16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는 그 지원을 이유로 사실확인 대상의 선정, 검증 기준의 설정, 사실확인 결과물의 내용 또는 공표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시·요구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10(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
원장이 지명한다.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
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
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 설>

③ 분쟁조정부-----

-----.

④ 분쟁조정부-----

-----.

⑤ 분쟁조정부-----
-----.
- 분쟁조정부-----

-.

⑥ ----- 분쟁조정
부-----

-----.

제36조의2(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
징금을 부과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
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
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

2.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
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
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
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

<신 설>

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②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또는 수익 현황 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법 위반 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

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

<신 설>

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의 10일 전까지 「행정기본법」 제29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
하여야 한다.

제36조의4(과징금 또는 가산금 징수에 필
요한 사항) ① 법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
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
의2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위
해 독촉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
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
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

<신 설>

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의5(강제징수의 위탁) ①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체납 처분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u>
--	---

[별표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2조제1항제3호의2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전송·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검색 서비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일반 정보를 검색했을 때 해당 정보 또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별표 1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6조의2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법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의24제1

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 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2천만 미만

2) 1)의 표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과실 여부, 유통의 방법 및 수단, 해당 정보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피해자에 대한 금품 등 요구 여부, 조사 협조 여부, 피해자 구제 노력 정도, 위반행위 시정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가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 3)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8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Code of Principles

제3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44조의 10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제3조(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영 [별표 1의4] 2. 가. 1)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1의4]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필수적 가중) 영 [별표 1의4] 1. 다.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확정판결 후 2회 유통행위를 한 경우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확정판결 후 3회 이상 유통행위를 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제6조(추가적 가중·감경) 영 [별표 1의4]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부과과징금의 결정)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3.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제8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제4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위반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합산 위반점수 = $\sum(\text{평가항목별 위반점수} \times \text{비중})$

합산 위반점수	중대성의 정도
25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0이상 25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5이상 20미만	보통 위반행위
10이상 15미만	약한 위반행위

2. 세부평가 기준표

위반점수 평가항목 비중		상(30점)	중(20점)	하(10점)
고의·과실	0.2	불법정보 또는 허위 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불법정보 또는 허위 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정보 또는 허위 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유통의 방법 및 수단	0.2	유통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유통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의 유형	0.2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 민주적 사회질서, 개인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정책, 왜곡, 재난, 공중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 또는 소수 집단에 관한 사안인 경우 등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및 정도	0.2	정보 주체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보 주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경우(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보통인 경우(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경미한 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고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반행위가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3.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의·과실

유통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유통의 방법 및 수단

유통 방식, 유통 수단, 유통 기간, 유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유통행위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도

정보 주체의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며, 정보 주체 이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별표 2]

추가적 가중·감경 세부 기준(제6조 관련)

I. 가중사유 및 비율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 또는 조사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II. 감경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 또는 조사에 대하여 자료 제출, 사실 확인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삭제, 정정, 안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전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